■ 해양경찰교육원 학생생활규칙[별표 3]

# 신임과정 학생 특별·청원휴가 기준(제22조 제1항 관련)

| 구 분 | | 적용대상 | 일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특별휴가 | 결혼 | 본인 | 5일 | |
| | | 자녀 | 1일 | |
| | 출산 | 본인 및 배우자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) | 20(25)일 | |
| 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 부모 | 5일 | |
| | |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, 외조부모 | 3일 | |
| | |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| 3일 | |
| 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 | 3일 | |
| 청원휴가 | 결혼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일 | |
| | 사망 |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| 1일 | |
| | 위독 | 배우자, 본인 자녀, 본인·배우자의 부모 | 2일 | |
| | 자격취득 | 자격취득 희망자: 시험당일<br>(다만,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(별표9)에 명시된 시험에 한함.) | 1일 | |
| | 기타 |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<br>(다만, 교육 기간 內 2회를 초과하지 못함) | 1일 | |
| | 출석요구 | 출석요구서에 의한 타 기관 출석 | 1일 | |
| | 진료입원 | 본인 상병으로 진료·입원 시<br>(다만, 공휴일 또는 원거리로 인해 당일 진료·입원이 불가능한 경우, 전일 이동에 대하여 학생과장(학생지도계장)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.) | 진료, 입원기간 | |

*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학생과장(학생지도계장), 바다로함장, 실습관서의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.
* 본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특별휴가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
* 교육원 인근 병원진료가 불가하여 상급병원의 진료 소견을 받은 경우 원거리 지역에서 입원·통원치료를 할 수 있다.
* 주말 공휴일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# 외출·외박 기준(제23조 관련)

| 구분 | 실시내용 | 실시시간 |
|---|---|---|
| 외출 | 매주 수요일 (다만, 입교훈련 종료 후) | 일과 후 ~ 22:00 |
| 외박 | 금~일·공휴일 (다만, 입교훈련 종료 후) | 금요일 13:00 ~ 일요일 22:00 |

* 외출은 일과 중 시간당 10분을 초과할 경우 1시간으로 인정한다.
* 1일의 산정 기준은 00:00시부터~ 당일 23:59분으로 산정한다.
* 외박 복귀일에는 18:00 이후 입교할 수 있다.